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안 제6조)

다. 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7, 제59조의2)

마.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4~제33조의5)

바. 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공개) ① 법 제12조의2제3항단서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 시행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3(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는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제1호의 품목 관련 사업자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32조의2(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 · 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정부로부터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입명령을 해제 할 수 있다.

제32조의3(지원금의 회수절차)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33조의2(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망센터의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1의2호와 같다.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간·국내외 기업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지원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의5(수입 위험 완화 사업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수입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의6(재고확대 권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 총 재고량
2. 국내 수입규모
3. 국제가격 변화
4. 수입대체 가능성

5.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여부

6.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제33조의7(재고확대 권고대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공급망안정품목 관련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업과 다음 각 호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1. 재고 확대 물량

2. 재고 확대 기간

3.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사항

4. 기타 재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1. 대상 기업명, 소재지

2. 대상 품명 및 규격 또는 구조

3. 수량, 단위 등 물량

4. 기타 재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희소금속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일 것

2. 희소금속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계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희소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계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희소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4.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

제8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비용의”를 “경비의 전부 또는”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 업무
2. 법제12조의2 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업무
3. 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 업무
4. 법 제14조의 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23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 업무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76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법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업무를 제2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망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3 제4항제2호	1월 이내 지정 요건 충족 명령	지정취소		
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전담 인력, 독립된 공간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3조의2제2항	3월 이내 지정 요건 충족 명령	지정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u> <u>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u>시행령</u>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u> <u>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u> <u>특별조치법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 <u>소재 · 부</u> <u>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u> <u>한 특별조치법</u> 」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재 · 부</u> <u>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u> <u>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u> <u>법</u> 」----- -----.
제2조(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 위) 「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u> <u>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 · 부 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 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제2조(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 위) 「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u> <u>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u> <u>위한 특별조치법</u>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	①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3.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

1. -----

-----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공개) ① 법 제12조의2제3항단서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 시행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3(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
·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
· 단체 · 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는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

<신 설>

한 자료

4. 제1호의 품목 관련 사업자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32조의2(해외생산품목의 반입

명령 절차)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정부로부터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 되었는지 여부

<신 설>

<신 설>

<신 설>

를 확인하여 반입명령을 해제
할 수 있다.

제32조의3(지원금의 회수절차) &
#160;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
유, 회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장의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33조의2(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
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
센터”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망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공급망센터의장은 법 제23조
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신 설>

<신 설>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1의2호와 같다.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간·국내외 기업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지원 여부, 지원의 범

<신 설>

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의5(수입 위험 완화 사업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수입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 생산시설의 구축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

<신 설>

<신 설>

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의5제1항에 따른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의6(재고확대 권고기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 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 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 우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에 대 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국내 총 재고량
2. 국내 수입규모
3. 국제가격 변화
4. 수입대체 가능성
5.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 능여부
6.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 목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제33조의7(재고확대 권고대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 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공급망안정품목 관

제56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생략)

련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의6제1항에 따라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업과 다음 각 호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1. 재고 확대 물량
2. 재고 확대 기간
3.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사항
4. 기타 재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3조의6제1항에 따라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1. 대상 기업명, 소재지
2. 대상 품명 및 규격 또는 구조
3. 수량, 단위 등 물량
4. 기타 재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6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
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
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4. ~ 9. (생략)

<신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한국산업기술기
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4. ~ 9.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기준) 법제37조의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희소
금속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일 것

2. 희소금속센터의 업무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
계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희소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
다)이 있는 사람
다. 희소금속산업 관련 이공
계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을 포함한다)으로서 희소
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4.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
과 전문성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선정 업무
2. 법제12조의2 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업무
3. 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 선정 업무
4. 법 제14조의 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23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 업무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 76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업무를 제2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⑥ -----

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u>비용의</u>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u>경비의 전부 또는</u> <u>는</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913